

□ 공고 제2020-44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0. 5. 27.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규정 제476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7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6.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 8.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안)
<p>제37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p>1. ~ 5.(생략)</p> <p>6.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u>다만,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7. ~ 8.(생략)</p>	<p>제37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p>1. ~ 5.(현행과 같음)</p> <p>6.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u>다만,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7. ~ 8.(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공고 제2020-45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  
도청주의료원 인사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 5. 27.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세칙 제128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인사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인사규정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지역인재의 우선채용) ①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지역인재의 우선채용을 위하여 그 응시자격을 지역인재로 제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지역인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고일 이전 최근 1년 동안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자
  2. 공고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3. 충청북도 소재지 대학 ·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자
- ③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지역제한, 가점부여, 가정비율 등)은 채용계획에 반영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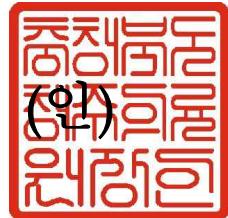
현 행	개 정(안)
(신설)	<p>제4조의 2(지역인재의 우선채용) ①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지역인재의 우선채용을 위하여 그 응시자격을 지역인재로 제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p> <p>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지역인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공고일 이전 최근 1년 동안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자</li><li>2. 공고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li><li>3. 충청북도 소재지 대학·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자</li></ol> <p>③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지역제한, 가점부여, 가정비율 등)은 채용계획에 반영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공고 제2020-46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연봉제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 5. 27.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세칙 제129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연봉제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연봉제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신설**한다.

제27조의 2(보상금) ①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염관리 기관으로 지정 등 의료원의 비상경영으로 진료수익 등이 현저히 감소하였을 경우, 진료실적급 지급 대상자에게 전년 동월에 발생된 진료실적급을 기준으로 그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신규입사자 등 전년 동월 진료실적급이 없는 경우 진료실적급지급기준 별표 1의 과별 진료목표액 목표급상한액 50%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염관리기관 지정 등 비상경영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진료실적급지급기준 별표 1의 과별 진료목표액 목표급상한액 50% 범위안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급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달의 이후 2개월까지로 하고, 제2항의 지급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달까지로 하며, 지급된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 있을 시에는 그 지침에 따라 정산한다.

④ 보상금의 지급 시기 및 대상 등의 세부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2월 21일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안)
(신설)	<p>제27조의 2(보상금) ①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염관리기관으로 지정 등 의료원의 비상경영으로 진료수익 등이 현저히 감소하였을 경우, 진료실적급 지급 대상자에게 전년 동월에 발생된 진료실적급을 기준으로 그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신규입사자 등 전년 동월 진료실적급이 없는 경우 진료실적급지급기준 별표 1의 과별 진료목표액 목표금상한액 50%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염관리기관 지정 등 비상경영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진료실적급지급기준 별표 1의 과별 진료목표액 목표금상한액 50% 범위안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지급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달의 이후 2개월까지로 하고, 제2항의 지급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달까지로 하며, 지급된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 있을 시에는 그 지침에 따라 정산한다.</p> <p>④보상금의 지급 시기 및 대상 등의 세부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2월 21일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일부터 시행한다.</p>

□ 공고 제2020-47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진료실적급지급기준 일부개정기준을 이에 공포  
한다.

2020. 5. 27.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기준 제130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진료실적급지급기준 일부개정기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진료실적급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별표 1]

## 과별 진료목표액

(단위 : 천원)

진료과별	월간 목표액 (또는 인원)	목표급 상한액	비고
내 과	110,000	16,500	
정신건강의학과	66,000	9,900	
외 과	85,000	12,750	
신경외과	60,000	9,000	
정형외과	102,000	15,300	
재활의학과	80,000	12,000	
신경과	60,000	9,000	
산부인과	30,000	4,500	
소아청소년과	25,000	3,750	
안 과	40,000	6,000	
이비인후과	40,000	6,000	
비뇨기과	65,000	9,750	
피부과	40,000	6,000	
치 과	40,000	6,000	
한방과 및 한의원	30,000	4,500	
건강 검진팀	내 과	250,000	종합검진 근무의사 (치과제외) 전체
	가정의학과	일 60명 (대장내시경30명)	
	직업환경의학과	150,000	직업환경의학과(보건대행 전담 제외) 전체
		50,000	보건대행 전담
응급실	월 750명	목표액 15%	응급실 전체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2,650	
영상의학과		9,300	
마취통증의학과		3,300	

※ 공중보건의는 진료목표액 산정에서 제외함

※ 응급실 월간목표액은 월간목표인원에 매월 행위료 수입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연봉계약자(진료실적급 대상)에게 균등지급한다.

<개정>

[별표 1]

## 과별 진료목표액

(단위 : 천원)

진료과별	월간 목표액 (또는 인원)	목표급 상한액	비고
내 과	110,000	16,500	
정신건강의학과	66,000	9,900	
외 과	85,000	12,750	
신경외과	60,000	9,000	
정형외과	102,000	15,300	
재활의학과	80,000	12,000	
신경과	60,000	9,000	
산부인과	30,000	4,500	
소아청소년과	25,000	3,750	
안 과	40,000	6,000	
이비인후과	40,000	6,000	
비뇨기과	65,000	9,750	
피부과	40,000	6,000	
<b>가정의학과</b>	<b>60,000</b>	<b>9,000</b>	
치 과	40,000	6,000	
한방과 및 한의원	30,000	4,500	
건강 검진팀	내 과	250,000 일 60명 (대장내시경30명)	37,500
	가정의학과		종합검진 근무의사 (치과제외) 전체
	직업환경의학과	150,000 50,000	직업환경의학과(보건대행 전담 제외) 전체 보건대행 전담
응급실	월 750명	목표액 15%	응급실 전체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2,650	
영상의학과		9,300	
마취통증의학과		3,300	

※ 공중보건의는 진료목표액 산정에서 제외함

※ 응급실 월간목표액은 월간목표인원에 매월 행위료 수입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연봉계약자(진료실적급 대상)에게 균등지급한다.